

제 호

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

1. 기관명:
2. 소재지:
3. 기관장 성명:

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·보존하여 교육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 직인

(뒤쪽)

변경사항 등

[illegible]